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4조  
원산지 증명

1.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여겨진다.
  - 가. 제3.15조에 따라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 나. 발급 기관이 발급하고 제3.16조에 따라 상호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의하여 교환되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 다. 관련 생산품이 식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생산품을 기술한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제3.17조에 명시된 경우)
2. 원산지 증명은
  - 가. 서면으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통보한 전자적 형식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그리고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3. 각 당사국은 영어로 작성된 원산지 증명이 발급일(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경우) 또는 작성일(제1항다호의 경우)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3.15조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다.

3. 원산지 증명서는

가. 부속서 3-나-1에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3-나-2에 규정된 첨부 서식을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고유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의 관인을 포함한다. 그 관인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적용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가. 단일 선적에 대하여 발급된 둘 이상의 송장을 표시할 수 있다. 또는

나. 복수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각 상품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은

가.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본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또는

나. 오류에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 또는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원본 원산지 증명서를 수정할 수 있다. 모든 변경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의 관인에 의하여 인증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의 이름, 주소 및 관인의 날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모든 후속 변경은 신속하게 통보된다. 양 당사국은 지난 3년 동안의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웹사이트는 양 당사국에 접근 가능하다.

7.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sup>1</sup> 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제5항가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 후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8. 원본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등본은

가.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 후 1년 이내에 발급된다.

나. 원본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신청을 기초로 한다.

다. 원본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및 발급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진정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 제3.16조

####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달력상의 7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제3.14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특히 전자 원산지 증명서의 전송에 대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 제3.17조 원산지 신고서

1. 제3.14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가. 제3.19조의 의미 내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미화 6,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생산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국내 법률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관련 생산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3. 원산지 신고서(부속서 3-다에 제시된 문안)는 관련 생산품이 식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생산품을 기술한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된다. 신고서는 또한 수기로 작성될 수 있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내구성이 있는 잉크를 사용하여 판독 가능한 정자로 작성된다.

4.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다. 그러나 제3.19조의 의미 내에서의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본인에 의하여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 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공하는 한,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5. 원산지 신고서는 관련된 생산품이 수출될 때, 또는 관련된 생산품의 수입 후

2년 이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률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원산지 신고서가 수입 당사국에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 제3.18조

#### 제3자 송장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 제3.19조

#### 인증수출자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로서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대한 인증을 규정한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 나. 그 수출자는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한다.
- 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다.
- 라.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고 있다.
- 마. 그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제3.22조에 따른 검증에 협조하고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의 준비도를 확인하는 생산자의 신고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바.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정리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가. 자국의 인증수출자 절차 및 요건을 공개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다.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 부여된 인증과 관련한 양 당사국의 인증수출자에 대한 정보<sup>2</sup>를 안전한 웹사이트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교환한다.

3. 제2항라호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호에 언급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4.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제3.25조에 따라,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는 목적상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기록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

<sup>2</sup> 이 정보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발급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의 만료일 및 최소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수준에서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을 포함한다.

나.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허용받은 상품으로서, 그 신고서 작성 시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

다. 오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모든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라. 제4항나호에 언급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5.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포함하여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고,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6. 인증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 제3.20조

####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다음을 규정한다. 수입자는,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그리고
-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의 사본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한다.

3.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생산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생산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생산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러한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은 상업적 수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가. 수입이 간헐적인 경우

- 나. 수입이 수취인이나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생산품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그리고

- 다. 그 생산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이들 생산품의 종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조지아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인 경우 미화 500달러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생산품인 경우 미화 1,200달러

- 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인 경우와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생산품인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6.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수입자는 제3.13조에 언급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제공한다.

8.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 제3.21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그 당사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그 상품이 수입된 날 후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 및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22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 상품의 생산과정 및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제3.25조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2. 제1항에 따른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과 그 응답으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된다.

3.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은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더 긴 기간이 될 것임을 표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요구받은 충분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을 완료하기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최소 30일 기간의 서면 통보를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가. 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1) 검증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2) 그 상품의 원산지 증명 또는 그 사본, 그리고

3) 그러한 요청의 목적상 필요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 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증명 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표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그 진술은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의 접수일 후 180일 내에 서면 진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공된 서면 진술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요청된 모든 정보는 당사국이 관세 당국의 승인된 연락처를 통하여 원본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따른 통보의 수령부터 30일 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보를 한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다. 가호에 따른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그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통보의 수령부터 15일 내에,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제안된 검증 방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 이 연장은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된다.

라.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후 12개월 내에,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 판명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6.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그 상품은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또는 관세의 납부 후 반출될 수 있다. 검증 결과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함이 확인되면 납부된 보증금 또는 관세는 환급된다.

7.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미 결정했을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고 입증되기 전까지 그와 동일 상품의 모든 후속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8. 한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명 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23조

####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나.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2.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3.22조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또는
  - 다. 제3.22조에 따른 검증 방문 요청이 거부된 경우

### 제3.24조

####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 오류 또는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과 같은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제3.25조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 발급 기관 또는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되거나 작성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 나.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 제3.26조 협의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정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한다.

### 제3.27조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3.13조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그 당사국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

다만, 그 상품이 제3.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발급되거나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제3.20조에 따른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3.28조

#### 별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벌칙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제3.29조

#### 의사소통 언어

수입 당사국과 수출 당사국 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 제3.30조

#### 연락처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이 장의 이행을 위한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하나 이상의 연락처에 대한 연락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 부속서 3-나-1

### 원산지 증명서

####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한국-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KG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주해 참조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수입자나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4.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발일 선명/편명 등 하역항		5. 비고					
6. 품목번호	7. 포장의 표시 및 번호	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을 포함합니다)	9. HS 코드 (6단위 코드)	10. 원산지 기준(뒷면 주해 참조)	11.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 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공장도 가격을 기재합니다)	12. 송장 번호 및 날짜	
1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국가)		14.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본 상품에 대하여 한국-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_____ (수입국)		장소 및 날짜, 증명기관의 관인  _____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_____							
15. <input type="checkbox"/> 제3자 송장							

## 뒷면 주해

1. 한국-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GCEPA)에 따른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하는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조지아이다.

2. 조건: KGCEP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위에 명시된 당사국들에 송부된 상품은

- 1)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제3.13조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 3) 이 장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비고: 제5란에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에서 비고는 아래와 같다.

조건	비고
제3.15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다.	“소급 발급”
제3.15조제8항에 따라 진정등본이 발급된다.	“진정등본”

4. 원산지 기준: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상품의 경우, 충족된 원산지 기준은 이 서식의 제10란에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서식의 제13란에 국가명이 기재된 첫 번째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10란에 기입
가. 제3.4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번변경</li><li>- RVC</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CTC”</li><li>-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번변경+RVC</li> <li>- 특정 공정</li> <li>- 그 밖의 특정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VC” : 예를 들어, “RVC 45페센트”</li> <li>-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를 들어, “CTH + RVC 40페센트”</li> <li>- “특정 공정”</li> <li>- 그 밖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li> </ul>
라. 제3.12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3.12조”

5.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다.

6. 상품명: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7. 공장도 가격: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11란에 공장도 가격을 반영한다.

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코드: 각 상품에 대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코드는 6단위로 구성된다.

9. 제3자 송장: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자 송장”란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름 및 국가와 같은 정보는 제15란에 표시된다.

주: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뒷면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부속서 3-나-2  
원산지 증명서(추가면)

원본(제2사본/제3사본)

6. 품목번호	7. 포장의 표시 및 번호	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을 포함합니다)	9. HS 코드 (6단위 코드)	10. 원산지 기준(뒷면 주해 참조)	11.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 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공장도 가격을 기재합니다)	12. 송장 번호 및 날짜
1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14.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국가)			————— 장소 및 날짜, 증명기관의 관인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본 상품에 대하여 한국-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15. <input type="checkbox"/> 제3자 송장						

### 부속서 3-다

####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에 문안이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_\_\_\_\_<sup>1</sup>)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생산품이 \_\_\_\_\_<sup>2</sup>의 특혜원산지 생산품임을 신고한다.

.....<sup>3</sup>

(장소 및 날짜)

.....<sup>4</sup>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명, 또한 이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sup>1</sup> 이 란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sup>2</sup> 생산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sup>3</sup> 이 표시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

<sup>4</sup>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명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인의 이름의 작성에 대한 면제 또한 의미한다.